

남북협력기금

재무제표에 대한

# 감사보고서

제 21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 20기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 목 차

=====

	<u>페이지</u>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 2
재 무 제 표	
· 재 정 상 태 표 .....	3
· 재 정 운 영 표 .....	4
· 순자산변동표 .....	5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6 ~ 15

## 외 부 감사 인 의 감사 보고서

남북협력기금  
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본 감사인은 첨부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의 2011년 12월 31일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 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기금수탁관리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남북협력기금의 2011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정운영결과 및 순자산의 변동을 국가회계기준 및 남북협력기금운용 관리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은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와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출금 1,073,191백만원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출금 1,374,393백만원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58조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31일 현재 상기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출금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출금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이에 따른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에는 특히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삼 일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安昊鎔

2012년 1월 3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2년 1월 3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기금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재 정 상 태 표

제21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20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과 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1,039,949,698,118		1,022,473,499,920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3)		74,048,080,990		69,722,388,320
1) 현금및현금등가물		74,048,080,990		69,722,388,320
2. 단기금융상품(주석 3)		427,700,000,000		450,000,000,000
1) 정기예금		385,100,000,000		450,000,000,000
2) 기타의 단기 금융상품		42,600,000,000		-
3. 단기투자증권(주석 4)		455,645,933,397		434,042,056,425
1) 지분증권		453,645,933,397		352,094,243,958
2) 채무증권		2,000,000,000		81,947,812,467
4. 미수채권(주석 6)		9,990,695,548		7,046,153,654
1) 미수이자수익		9,990,695,548		7,046,153,654
5. 단기대여금(주석 5, 6)	75,489,033,140		64,545,135,770	
1) 정부의단기대여금	75,489,033,140		64,545,135,77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2,924,044,957)	72,564,988,183	(2,882,234,249)	61,662,901,521
1) 단기용자금대손충당금	(2,036,234,021)		(2,389,273,241)	
2) 단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	(887,810,936)		(492,961,008)	
II. 투자자산		2,659,858,822,711		2,664,989,863,942
1. 장기대여금(주석 5, 6)	2,665,452,145,998		2,669,790,153,999	
1) 정부의장기대여금	2,665,452,145,998		2,669,790,153,999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5,593,323,287)	2,659,858,822,711	(4,800,290,057)	2,664,989,863,942
1) 장기용자금대손충당금	(5,593,323,287)		(4,790,056,554)	
2) 장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	-		(10,233,503)	
III. 기타비유동자산		69,698,777,222		58,786,534,256
1. 장기미수채권(주석 6)		69,698,777,222		58,786,534,256
1) 장기미수이자수익		69,698,777,222		58,786,534,256
자 산 총 계		3,769,507,298,051		3,746,249,898,118
부 채				
I. 유동부채		23,740,379,067		18,799,697,323
1. 기타유동부채		23,740,379,067		18,799,697,323
1) 미지급비용		23,724,543,451		18,799,697,323
2) 선수수익		15,835,616		-
II. 장기차입부채		2,362,491,000,000		2,258,091,000,000
1. 장기차입금(주석 7)		2,362,491,000,000		2,258,091,000,000
1) 정부내장기차입금		2,362,491,000,000		2,258,091,000,000
부 채 총 계		2,386,231,379,067		2,276,890,697,323
순 자 산				
I. 기본순자산		-		-
II. 적립금 및 잉여금		1,366,929,985,587		1,449,264,956,837
III. 순자산조정(주석 9)		16,345,933,397		20,094,243,958
순 자 산 계		1,383,275,918,984		1,469,359,200,795
부 채 와 순 자 산 계		3,769,507,298,051		3,746,249,898,11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재 정 운 영 표

제21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20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과 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b>34,489,362,671</b>	<b>(9,437,346,804)</b>	<b>25,052,015,867</b>	<b>46,892,533,918</b>	<b>(13,110,753,311)</b>	<b>33,781,780,607</b>
1.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	2,782,660,925	(3,652,320)	2,779,008,605	2,187,985,825	(136,164,630)	2,051,821,195
2. 인도적문제해결 프로그램	10,887,113,781	(288,827,270)	10,598,286,511	21,870,211,244	(4,080,617,070)	17,789,594,174
3.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주석 8)	13,653,491,113	(7,642,763,944)	6,010,727,169	18,248,617,301	(2,994,920,450)	15,253,696,851
4. 남북경제협력(유자) 프로그램	-	-	-	4,585,719,548	(5,899,051,161)	(1,313,331,613)
5. 개성공단지원 프로그램	7,166,096,852	(1,502,103,270)	5,663,993,582	-	-	-
II. 관리운영비			<b>83,539,600</b>			<b>77,738,910</b>
1. 경비			83,539,600			77,738,910
III. 비배분비용			<b>113,500,173,458</b>			<b>139,821,486,612</b>
1. 이자비용			113,500,173,458			112,042,282,297
2. 평가손실			-			27,779,204,315
IV. 비배분수익			<b>56,299,190,245</b>			<b>48,899,056,797</b>
1. 이자수익			34,025,391,195			40,983,262,007
2. 평가이익			14,052,858,400			7,915,794,790
3. 자산처분이익			8,220,940,650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b>82,336,538,680</b>			<b>124,781,949,332</b>
VI. 비교환수익 등			<b>1,567,430</b>			<b>457,920</b>
1.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567,430			457,920
VII. 재정운영결과(V-VI)			<b>82,334,971,250</b>			<b>124,781,491,412</b>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순자산변동표

제21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20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단위:원)

과 목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전기초)	-	<b>1,574,046,448,249</b>	<b>10,900,371,150</b>	<b>1,584,946,819,399</b>
1. 보고금액	-	1,574,046,448,249	10,900,371,150	1,584,946,819,399
II. 재정운영결과	-	<b>124,781,491,412</b>	-	<b>124,781,491,412</b>
III. 조정항목	-	-	<b>9,193,872,808</b>	<b>9,193,872,808</b>
1. 투자증권평가이익	-	-	9,193,872,808	9,193,872,808
IV. 기말순자산(전기말)(I - II + III)	-	<b>1,449,264,956,837</b>	<b>20,094,243,958</b>	<b>1,469,359,200,795</b>
I. 기초순자산(당기초)	-	<b>1,449,264,956,837</b>	<b>20,094,243,958</b>	<b>1,469,359,200,795</b>
1. 보고금액	-	1,449,264,956,837	20,094,243,958	1,469,359,200,795
II. 재정운영결과	-	<b>82,334,971,250</b>	-	<b>82,334,971,250</b>
III. 조정항목	-	-	<b>(3,748,310,561)</b>	<b>(3,748,310,561)</b>
1. 투자증권평가손실	-	-	(3,748,310,561)	(3,748,310,561)
IV. 기말순자산(당기말)(I - II + III)	-	<b>1,366,929,985,587</b>	<b>16,345,933,397</b>	<b>1,383,275,918,984</b>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1 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 남북협력기금

### 1. 기금의 개요 :

남북협력기금(이하“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대한민국정부가 25,000백만원을 출연함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

기금의 재무제표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그리고 2009 회계연도부터 적용된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회계·기금별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금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수익의 인식 -

기금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나.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금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다. 장·단기금융상품 -

기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유가증권 -

기금은 유가증권에 대해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을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내 또는 1년 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경우 재정상대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 용자보조원가충당금 -

기금은 대여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는 대여금의 경우 용자회계준칙에 의거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용자회계준칙 부칙 제 2조에 의거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용자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다만, 기금의 대여금 중 북한조선무역은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등 대여금에 대해서는 차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융자회계준칙 제1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승인 하에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바. 대손충당금 -

기금은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차주, 보증인, 유가증권 발행인, 보증의뢰인 등 관련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였습니다. 기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분류된 대여금에 대해서 각각 0.85%이상(일부 업종은 0.9%이상), 7%이상, 20%이상, 50%이상 및 100%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대여금 중 북한 조선무역은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등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58조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주석 5. 라. 참조). 상기 조항에 의하면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 보증하는 사업,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및 당해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담보 해당금액,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사. 우발상황 -

기금은 지출의 시기 및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 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기타의 기타비유동부채(기타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또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과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

기금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한 미 달러화 기준환율(당기말 ₩1,153.3/USD) 및 재정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산손익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출연금 -

기금이 수령하는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은 기금설치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하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의 기타 순자산증감으로 처리합니다. 단,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차. 위탁수수료 -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운용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통일부와 협의된 위탁수수료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고 프로그램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카. 법인세비용 -

기금의 운용소득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비용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계속

=====

남북협력기금

3.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

2011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연이자율(%)	금 액		금융기관
	2011. 12.31	2011	2010	
<u>현금및현금등가물</u>				
MMDA	3.15	₩ 1,865	₩ 4,014	국민은행
MMT	3.75	5,000	-	대우증권
MMF	실적배당	2,183	16,708	삼성자산운용(주)
정기예금	3.37 - 4.06	56,000	49,000	우리은행 외
표지어음	3.84	9,000	-	기업은행
		<u>74,048</u>	<u>69,722</u>	
<u>단기금융상품</u>				
정기예금	4.01 - 4.69	385,100	450,000	우리은행 외
MMT	4.4	10,000	-	우리투자증권
표지어음	4.04 - 4.35	32,600	-	기업은행
		<u>427,700</u>	<u>450,000</u>	
		<u>₩ 501,748</u>	<u>₩ 519,722</u>	

(\*)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은 없습니다.

4. 단기투자증권 :

2011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단기투자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액 시장성 있는 지분 증권입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2011			2010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u>단기투자증권</u>						
지분증권(*)	₩ 437,300	₩ 453,646	₩ 453,646	₩ 332,000	₩ 352,094	₩ 352,094
채무증권	2,000	2,000	2,000	81,793	81,948	81,948
	<u>₩ 439,300</u>	<u>₩ 455,646</u>	<u>₩ 455,646</u>	<u>₩ 413,793</u>	<u>₩ 434,042</u>	<u>₩ 434,042</u>

(\*)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투자증권 평가손익 (3,748)백만원 및 9,194백만원을 장부가액에 반영하였습니다.

(\*\*) 당기 및 전기 중 단기투자증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이자수익은 각각 4,742백만원 및 1,174백만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계속

=====

남북협력기금

5. 대여금 :

가. 2011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내 용	연이자율(%)	금 액	
		2011.12.31	2011	2010
정부외단기대여금	단기용자금	1.0 - 4.9	₩ 75,489	₩ 64,545
정부외장기대여금	장기용자금	0.0 - 5.9	2,665,452	2,669,790
			₩ 2,740,941	₩ 2,734,335

나. 2011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장·단기용자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내 용	연이자율(%)	금 액	
		2011.12.31	2011	2010
단기용자금	실적한도대출	1.2 - 3.8	₩ 7,124	₩ 8,961
	반출자금대출	3.0 - 4.9	460	466
	특별경제협력자금대출	2.0 - 3.0	37,372	30,232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9 - 3.0	23,066	22,514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2,372	2,372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5,095	-
			75,489	64,545
장기용자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9 - 5.9	167,183	182,744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55,780	52,862
	경수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	1,374,393	1,374,393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1,068,096	1,059,791
			2,665,452	2,669,790
			₩ 2,740,941	₩ 2,734,33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계속

=====

남북협력기금

5. 대여금, 계속 :

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종류별 정부승인금액 및 미집행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USD, 백만원).

대출종류	차주별	정부승인금액	집행금액(**)	미집행금액
대북식량차관(2000)(*)	북한조선무역은행	USD 100,000	USD 88,355	USD -
대북식량차관(2002)(*)	북한조선무역은행	110,000	106,000	-
대북식량차관(2003)(*)	북한조선무역은행	110,000	106,000	-
대북식량차관(2004)(*)	북한조선무역은행	124,000	117,986	-
대북식량차관(2005)(*)	북한조선무역은행	155,000	150,000	-
대북식량차관(2007)(*)	북한조선무역은행	154,000	151,701	-
대북자재장비차관(2002)	북한조선무역은행	45,000	42,887	2,113
대북자재장비차관(2003)	북한조선무역은행	60,000	68,051	(8,051)
대북자재장비차관(2005)	북한조선무역은행	28,500	21,959	6,541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2007)(*)	북한조선무역은행	80,000	77,600	-
		USD 966,500	USD 930,539	USD 603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3,542,000	₩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04)(*)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26,100	18,336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05)(*)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900	721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07)(*)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10,400	9,255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08)(*)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15,900	13,556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09)(*)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8,910	7,290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10)(*)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3,768	3,505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11)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5,999	5,489	510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한국관광공사 외	312,005	235,205	76,800
		₩ 3,925,982	₩ 1,667,750	₩ 77,310

(\*) 집행 완료

(\*\*) 2011년 12월 31일 현재 대북식량차관, 대북자재장비차관 및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의  
원화환산액은 1,073,191백만원 입니다(주석 6참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계속

=====

남북협력기금

라. 2011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장·단기유자금에 대한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2011		
	유자금액	용자보조원가 충당금	대손충당금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 1,073,191	₩ -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	58,152	-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235,205	888	7,629
	<u>₩ 2,740,941</u>	<u>₩ 888</u>	<u>₩ 7,629</u>

구 분	2010		
	유자금액	용자보조원가 충당금	대손충당금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 1,059,791	₩ -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	55,234	-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244,917	503	7,180
	<u>₩ 2,734,335</u>	<u>₩ 503</u>	<u>₩ 7,180</u>

(\*) 기금은 상기 대출금에 대하여 용자회계준칙 제 14조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58조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주석 2. 마, 바 참조). 그러나, 2011년 12월 31일 현재 상기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출금(대북식량차관, 대북자재장비차관 및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 1,073,191백만원 및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대출금(대북경수로사업 본 공사비) 1,374,393백만원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대출금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이에 따른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에는 특히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용자회계준칙에 의거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유자금에 대해서는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유자금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주석 2. 마, 바 참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계속

=====

남북협력기금

6. 외화자산 :

2011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외화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USD, 백만원).

구 분	2011		2010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장기용자금(대북차관)	USD 926,121	₩ 1,068,096	USD 930, 539	₩ 1,059,791
단기용자금(대북차관)	4,418	5,095		
장기미수채권	52,385	60,415	45,354	51,653
미수채권	996	1,149	-	-
	<u>USD 983,920</u>	<u>₩ 1,134,755</u>	<u>USD 975,893</u>	<u>₩ 1,111,444</u>

(\*) 당기 중 기금의 외화자산 환산과 관련하여 계상된 외화평가이익 14,053백만원 중 13,400백만원은 장단기용자금(대북차관)에서, 653백만원은 미수채권에서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7. 장기차입금 :

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금 액	
		2011.12.31	2011	201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한국은행	4.07 - 5.89	₩ 2,362,491	₩ 2,258,091
(차감: 1년이내상환일도래분)			-	-
			<u>₩ 2,362,491</u>	<u>₩ 2,258,091</u>

나.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연도별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상환연도	금 액
2012 년	₩ -
2013 년	930,000
2014 년	291,591
2015 년	90,500
2016 년	207,000
2017 년 이후	843,400
	<u>₩ 2,362,491</u>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계속

=====

남북협력기금

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

가. 기금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종 류	회 사 명	계약확정금액	계약미확정금액
경제협력사업보험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48개 업체	₩ 367,937	₩ 147,756

(\*)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대북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정치적 위험인 비상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으며, 과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당 보험계약은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 및 보험회계준칙에 의거한 보험충당부채는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당기 및 전기 중 상기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2011		2010	
	보험수익	보험비용	보험수익	보험비용
경제협력사업보험	₩ 1,698	₩ 4,377	₩ 1,624	₩ -

9. 순자산조정 :

당기 및 전기 중 순자산조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2011				2010			
	전기말	증가	감소	당기말	전기말	증가	감소	당기말
투자증권평가손익								
단기투자증권								
지분증권	₩20,094	₩7,369	₩11,117	₩16,346	₩10,900	₩15,113	₩5,919	₩20,094